

KH바텍 기업지배구조 헌장

KHVATEC Corporate Governance Charter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KH바텍 기업구조 기본정신)

KH바텍은 경영이념인 "윤리경영", "품질경영", "환경경영"을 바탕으로,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,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하여 회사는 물론 주주, 소속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글로벌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,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 하기 위해 『KH바텍 기업지배구조헌장』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.

주식회사 KH바텍은 본 헌장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주주 · 고객 · 임직원 ·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
제 2 장 주주

제 2 조 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,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-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

제 3 조 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 4 조 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.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

하며,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
제 3 장 이사회

제 5 조 (이사회 기능)

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

제 6 조 (이사회 구성)

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

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로 구성하여 이사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.

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

제 7 조 (사외이사)

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·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, 충실성(Commitment), 경영마인드, 독립성, 사회적 지명도, 청렴도, 다양성 등의 선정 기준을 고려한다.

③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.

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이사회 운영)

①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,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.

②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·보관한다.

③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
④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

제 9 조 (이사의 의무 및 책임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 의 6 배(사외이사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제 10 조 (평가 및 보상)

-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,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요 경영진의 보수 및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

제 4 장 감사기구

제 11 조 (감사의 권한과 의무)

- ①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관련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②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 12 조 (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의무)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정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.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, 외부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-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활동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해관계자

제 13 조 (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)

- ① 회사는 주주 · 고객 · 임직원 · 협력사 ·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,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, 개선에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접근을 지원한다.

제 6 장 회계자료 처리 및 공시

제 14 조 (회계 처리 기준)

회계 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국내의 회계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하며, 해외에 관련된 것일 경우 각 국가의 회계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.

제 15 조 (공시의무)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
부칙

이규정은 2021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